

감리비예치보증약관

개폐정리 2013. 6.10

개폐정리 2015. 6.30

개폐정리 2017.10.11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합니다.
2. “주채무자”는 보증서에 기재된 시행자를 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는 보증서에 기재된 감리자를 말합니다.
4. “보증사고”는 주채무자가 공사감리계약서에서 정한 보증기간내의 매감리비지급기일에 감리비를 지급(어음이나 수표의 지급도 지급으로 간주한다. 이하 같다)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 (보증채무의 성립) 보증회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효하게 성립하며, 보증채무 성립후 보증채권자가 공사감리계약을 이행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채무자가 공사감리계약서에서 정한 보증기간내의 매감리비지급기일에 감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채권자에게 그 감리비를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합니다.

제4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감리비를 지급하지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 제5조(감리대가이외의 비용부담)에 규정한 비용
3. 보증사고 또는 부도발생(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을 포함한다)후 감리를 중단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채무(사전에 보증회사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감리비의 지급을 어음이나 수표로 한 경우로서 동어음·수표의 부도발생으로 발생한 감리비 미지급채무
5. 이자등 종속채무
6.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채무

제5조 (보증계약의 효력상실) 이 보증계약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보증계약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미리 서면으로 보증회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공사감리계약서가 변경된 경우
2. 감리자 응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위조한 것이 판명된 경우
3. 공사감리계약서를 위조·변조하였거나, 법령에 위반하여 작성한 경우

제6조 (보증채권자의 의무) ①보증채권자는 월별공정확인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보증회사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주채무자의 보증사고 또는 부도발생(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을 포함한 다) 후에는 지체없이 감리업무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증사고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보증 회사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보증회사가 공정률 등을 감안하여 감리중단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에는 보증채권자는 감리를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합니다.

④감리업무종료후에는 종료일로부터 7일까지 최종보고서를 보증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보증회사는 보증채권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의무위반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발생채무에 대하여 이행을 유보합니다.

제7조 (보증사고의 통지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보증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행청구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보증서 또는 그 사본
3. 감리일지사본(원본대조필)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시점의 감리업무수행결과 종합보고서
4. 보증채무의 발생 및 동 금액확정을 위한 증빙서류
5. 기타 보증회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보증회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통지 또는 청구를 해태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보증채무의 확인조사) ①보증회사는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보증회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보증채무의 이행시기) 보증회사는 제8조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지체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제10조 (보증채무의 이행장소)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보증회사의 관할 영업점으로 합니다.

제11조 (보증채무의 이행한도) 보증회사는 주채무자의 미지급금액에서 다음 각호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되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1. 아래 산식에 의한 금액
$$\text{계약금} \times (\text{총감리금액} - \text{보증사고일까지의 감리금액}) \div \text{총감리금액}$$
2. 행정기관, 보증회사 또는 수분양자의 요구로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해 사용검사 전 부실감리로 판정될 경우 동부실감리를 원인으로 한 보증회사의 손해액 또는 손해예상액

제12조 (대위 및 구상) ①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보증회사에 제출하고 보증회사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보증회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

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양도 및 질권설정금지)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분실 및 도난 등) 이 보증서를 분실·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어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보증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보증회사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보증회사의 관할 영업점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보증회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